

위치	오류유형	수정 전	수정 후
문제편 103p 번호 : 32	문제-본문	32 □△× 배임의 죄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매도인 甲이 부동산을 매도하고 매수인 乙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을 수령한 후 제3자에게 담보조로 가등기를 경료해주었다가 이를 말소한 경우 배임죄의 죄책을 진다. ② 근저당권설정자가 그 근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에 식재된 수목을 처분하는 등으로 그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하게 된다. ③ 채권 담보 목적으로 부동산에 관한 대물변제약을 체결한 채무자 甲이 대물로 변제하기로 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甲에 대해 배임죄가 성립한다. ④ 공무원 甲이 대통령의 퇴임 후 사용할 사저부지와 그 경호부지를 일괄 매수하는 사무를 처리하면서 매매계약 체결 후 그 매수대금을 대통령의 아들 乙과 국가에 배분함에 있어 이미 복수의 감정평가업자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그 결과를 통보받았음에도 굳이 이를 무시하면서 인근 부동산업자들이나 인터넷, 지인 등으로부터의 불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감정평가결과와 전혀 다르게 상대적으로 사저부지 가격을 낮게 평가하고 경호부지 가격을 높게 평가하여 매수대금을 배분하여 乙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하게 하고 국가에 손해를 가한 경우 甲에 대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	① 甲이 채권자로부터 18억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甲 소유의 아파트에 채권자 명의의 4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제3자에게 채권최고액을 12억 원으로 하는 4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경우 甲은 배임죄의 죄책을 지지 아니한다.
		수정 사유	지문 수정

위치	오류유형	수정 전	수정 후
문제편 145p 번호 : 06	문제-본문	06 ○△× 사실의 착오(구성요건적 착오)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특별히 중한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 乙을 살해할 의사로 乙을 향해 총을 쏘으나 빗나가 옆에 있던 丙에게 명중하여 丙이 사망한 경우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의 결론이 다르다. ㉢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의 사례에서 乙에 대한 살인죄의 미수와 丙에 대한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 ㉣ 법정적 부합설은 사람을 살해할 의사로 사람을 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살인미수라고 하는 것은 일반인의 법감정에 반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① ㉠, ㉡ ② ㉡, ㉣ ③ ㉠, ㉣ ④ ㉢, ㉣	사실의 착오(구성요건적 착오)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특별히 중한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 乙을 살해할 의사로 乙을 향해 총을 쏘으나 빗나가 옆에 있던 丙에게 명중하여 丙이 사망한 경우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의 결론이 다르다. ㉢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의 사례에서 乙에 대한 살인죄의 미수와 丙에 대한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 ㉣ 법정적 부합설은 사람을 살해할 의사로 사람을 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살인미수라고 하는 것은 일반인의 법감정에 반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① ㉠, ㉡, ㉣ ② ㉠, ㉢, ㉣ ③ ㉡, ㉢, ㉣ ④ ㉠, ㉡, ㉣
		수정 사유	문제 수정

위치	오류유형	수정 전	수정 후
문제편 171p 번호 : 32	문제-본문	32 ⓪△× 횡령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2자간 명의신탁에서 부동산을 소유자로부터 명의 수탁 받은 자가 이를 임의로 처분하였다면 명의 신탁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 ② 명의신탁자가 매수한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 실 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명의수 탁자와 맺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매도인으로부터 바로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 친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을 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 여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 하지 않는다. ③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소유자와 부 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계약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수탁자 명 의로 마친 경우, 명의수탁자는 부동산 취득을 위 한 계약의 당사자도 아닌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 계에서 횡령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④ 중중 토지의 명의신탁에서 수탁자 甲이 그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횡령한 이후 기존의 근저당 권과 관계없이 그 토지를 매도한 경우 甲에게 별 도의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①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양자간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 하여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수정 사유	지문 수정

도서의 오류로 학습에 불편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더 나은 도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시대교육그룹이 되겠습니다.